

Ⅶ.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는 늦어도 2005년 2월이후에는 3층노후소득보장체제의 확립 차원에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될 예정으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만 입법예고 되어 있을 뿐, 재경부 및 노동부간의 의견조율문제 등으로 구체적인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계를 살펴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계는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작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연금자산운용규제, 수탁자책임규제, 재무건전성규제가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으며,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살펴본 후에 대표적인 수탁기관인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봄으로써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기본방향을,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의 세부방향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일찍이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노사간의 인식차이가 뚜렷하고, 특히 위험회피성향이 매우 강해 안전성중시의 규제감독을 매우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단 재무건전성규제에서 뿐만 아니라 연금자산운용규제 및 수탁자책임규제에서도 영미식 규제감독체계보다는 일본식 규제감독체계를 지향하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점진적인 규제감독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우리나라의 국내상황과 여건에 부응한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계는 대략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하에서 즉 ① 연금제정의 안전성중시 규제감독 지향 ② 삼위일체식 지급보증체제의 확립 ③ 자율투자규제체

계로의 점진적 전환 ④ OECD가이드라인에 입각한 연금자산의 운용등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규제감독체계가 정비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세부적 추진방향에서 첫째, 연금자산운용규제면에서는 ① 최소한도의 투자규제 견지 ② 단계적 투자규제 정책의 수립 ③ 상시적 퇴직연금 운용 감독체제 등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수탁자책임규제면에서는 일반적인 수탁자책임률의 도입이 매우 필요한데, 이는 ① 수탁자책임의 명확화 ② 수탁자배상책임보험의 도입검토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또한 투자교육 등 정보공시의 강화, 자주적 윤리규범 및 컴플라이언스체제구축 등이 이루어지도록 감독당국의 역할강화가 요구된다.

셋째, 재무건전성규제면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의 점진적 보완·정비를 통해서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급보증체제의 확립차원에서 단기적으로는 최소책임준비금제 도입을,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식 지급보증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연금재정의 검증체제 정비측면에서 ① 연금계리사에 의한 연금재정 검증 필요 ② 감독규제차원에서 지급능력비율제도 제정 ③ 연금회계기준제정에 의한 리스크관리강화 등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다만 향후과제측면에서 운용기관의 에이전시문제, 보험회사의 신탁업무 허용문제, 연금기금의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행사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작업이 요구된다.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제는 정적인 측면이 아닌 동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제는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근본목적, 즉 종업원의 안정적인 수급권보호와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이라는 차원에서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